

기능시험 채점기준·합격기준(제66조관련)

1. 특수면허

가. 채점기준

시험항목		감점 기준	감점방법
대형 견인 차 면허	(1) 피견인차 연결	10	○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,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
	(2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	20	○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
	(3) 피견인차 분리	10	검지선 접촉 시마다 ○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
소형 견인 차 면허	(1) 굴절코스 견인 통과	10	○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	(2) 곡선코스 견인 통과	10	○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	(3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	10	○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구난 차 면허	(1) 피견인차 연결	10	○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
	(2) 굴절코스 견인 통과	10	○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	(3) 곡선코스 견인 통과	10	○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	(4) 피견인차 분리	10	○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
	(5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	10	○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
나. 합격기준
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
- (1)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- (2)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(3)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